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22.12.28.

개정 2023.06.27.

2023.12.22.

(직제규정)

투자전략실(T.02-769-41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2조(외부위원의 자격)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외부 위원회의 자격요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 「정부기업예산법」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대체투자위원회 외부위원 선정) 대체투자위원회 외부 위원은 규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외부위원 전문가 풀에서 선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같은 호 라목 및 제2호의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대체투자위원회는 외부 위원 과반수 출석)과 그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 후단의 대체투자위원회 표결에는 감사실 직원이 입회하여 실시하며 투표용지는 감사실에서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결을 위해 심의에 참여한 외부 위원과 제4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공단 직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자) 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사적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위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가. 위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 위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위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위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6.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위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7.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위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안전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와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8. 그 밖에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자

가. 법령·기준에 따라 위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위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제6조(투자위원회의 운영) ① 투자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투자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투자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정 제15조 제3항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운용부서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자료의 요청) 규정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와 보고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리스크법무실장은 해당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활동

제8조(수탁자 책임활동 대상)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 책임활동을 위한 투자기업은 공단이 보유하는 국내 상장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결권 행사) ① 지침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방법은 「상법」 제368조 4에 따라 전자투표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의결권 행사는 보유주식에 대한 지분율 및 내부 보유 비중에 따라 결정 주체별 보유요건을 별표 1과 같이 하며, 그 이외의 의결권은 투자전략실장의 판단에 따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의결권 행사의 세부 사항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은 수탁자책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제8조에서 정한 투자기업 이외의 의결권 행사는 해당 자산군별 세부 투자자산의 정관 또는 계약에 따라 기금에 이익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 책임활동 자문) ① 제9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객관적 판단을 위해 2개 이상의 외부 전문기관과 자문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복수의 자문기관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개 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중점관리 기업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때에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무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자금운용

제11조(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방법) ①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른 월간 자금 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운용부서장은 자금수지계획서를 매월 말일까지 투자전략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수지계획서에 월별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다음과

같은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행실적 평균 비율이 분기별로 70% 미만

2. 집행실적이 해당 분기 내 2회 이상 70% 미만

③ 운용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행실적 부진 사유가 다음과 같은 때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1. 단기자금 운용의 적정성 유지

2. 대체투자의 장기성, 유동성의 부족 및 투자의 비정형성 등

④ 운용부서장은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자금수지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⑤ 투자전략실장은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과 규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자금운용계획을 리스크법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12조(운용자의 지정) ①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용자는 운용부서장 및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속 실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용자가 인사이동 또는 업무분장이 변경된 때에는 운용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용자가 지정된 때에는 운용부서장은 리스크법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자금운용에 따라 취득한 유가증권은 투자전략실장이 관리하며, 해당 증권의 관리를 위탁 전문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2.>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해 실물 증권은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고 관련 내용을 자산운용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용자금 현황과 일치하도록 월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거래기관 선정 및 배분) ① 운용부서장은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거래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거래기관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거래 한도를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은 「거래기관 선정 및 배분 기준」으로 정한다.

제15조(거래기관의 제한 종류 등) ① 규정 제24조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 거래정지 시행일 등에 관한 사항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규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기관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 각 호 중 다음 사항을 준용한다.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16조(채권 운용비중의 변경통보) 운용부서장은 규정 제28조제4항에 따른 신용채의 운용 비중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와 해소방안에 대해 리스크법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단기자금의 운용방법) ① 회계 담당 부서장은 규정 제29조에 따른 단기자금 운용을 위해 금전 출납 현황에 대해 매일 일일자금집계표를 작성하여 단기자금 운용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투자한 단기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만기 전에 교체할 수 있다.

1.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2. 다른 금융상품에 교체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투자대상의 관리) ① 규정 제31조제1호에 따른 종목이 KOSPI 200에서 제외된 때에는 그 제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두 매도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31조 제2호에 따른 종목이 매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KOSPI 200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때에는 그 기한이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두 매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기한 안에 매도가 어려운 때에는 리스크범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국내주식 직접운용 보유종목 관리) ① 국내주식팀장은 매월 종목별 보유 비중을 금융투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② 종목별 투자 한도가 주가상승 등으로 초과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의 축소, 결산 시가평가액의 장부반영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주식전환 등의 변경 사유로 투자 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투자전략의 방법으로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초과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국내주식팀장은 국내주식 직접운용 보유종목의 전일증가를 기준으로 장부가격(해당연도 분할상장주식의 장부가격은 분할상장일의 증가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업종지수 수익률(한국거래소에서 정한 업종지수에 대한 전일증가 기준 연초 대비 수익률을 말하며, 당해연도 새로 매입한 종목에 대한 업종지수 수익률은 해당 종목 최초 매입일 업종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대비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1. 장부가격의 15%를 초과하여 하락하고, 해당 업종지수 수익률 대비 10%p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 : 특이사항을 점검하여 10영업일 이내에 금융투자실장에게 서면으로 보고<개정 2023.12.22.>

2. 장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하락하고, 해당 업종지수 수익률 대비 20%p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 : 해당 종목의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 10영업일 이내에 자금운용관리단장의 결재를 받아 리스크범무실장에게 통보

⑤ 단, 제4항제2호에 대해서 리스크범무실장은 해당 종목의 관리방안에 대해 국내주식팀장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12.22.>

⑥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관리방안 및 조치사항은 해당년도 말까지 적용한다.

제20조(대체투자 만기전 처분등) ① 규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체투자를 만기 전에 처분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이익의 실현
2.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3. 원리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운용상 필요한 경우

② 대체투자실장은 규정 제39조제3항에 따라 위험과 수익성 등을 검토하여 그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추가출자가 필요한 경우
2. 수수료 인상 등 불리한 투자 구조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3. 그 밖의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대체투자의 운용방법) ① 규정 제40조제2항에 따라 대체투자의 운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투자 대상을 특정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용으로 투자를 결정
2. 투자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위탁 운용으로 투자를 결정

② 제1항 각 호의 투자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체투자 운용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3.06.27.>

제22조(대체투자의 사후관리) 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대체투자의 사후 관리 점검을 위하여 담당자는 현지에 방문하거나 총회 및 컨퍼런스 등에 참석할 수 있다.

제23조(전문가의 활용) ①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를 위촉할 때는 본 규칙 제2조 외부 위원의 자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영 안정성
2. 자문 실적
3. 자문 조직 및 전문인력
4. 그 밖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위탁운용사 선정계획 등) ① 위탁운용 부서장은 규정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위탁운용사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 등을 포함하는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운용사의 배분한도) ① 위탁운용사의 배분 한도는 위탁 운용 총 투자액(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운용사 : 15퍼센트
2. 투자자문사 : 10퍼센트

② 국내 위탁운용사를 통해 투자된 해외자산은 외국 위탁운용사를 기준으로 배분 한도를 점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분 한도를 초과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운용사의 선정취소) 위탁운용사가 관련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도 이후에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위험관리

제1절 위험관리 일반사항

제27조(위험관리) ① 위험관리는 자산군별로 각 운용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리스크범무실장은 주요 위험을 체계적으로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

제28조(위기관리) ① 리스크범무실장은 규정 제55조에 따라 수립된 비상계획의 위기관리를 위하여 본 규칙 제29조에서 설정된 한도 및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운용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를 위하여 리스크범무실장은 해당 운용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위험한도의 관리) ① 리스크범무실장은 자금운용계획에서 결정한 허용범위에 따라 기금운용에 관한 총 위험한도를 자산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리스크범무실장은 규정 제56조 및 본 조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위험한도 및 측정 방법에 따른 절차,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여 위험한도가 정상적으로 관리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정 등 준수사항 점검) ① 리스크범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운용부서의 자금운용계획 범위 내 운용
2. 기금운용과 관련된 규정 등 준수
3. 리스크관리계획의 운용 및 위험한도의 준수
4. 위탁운용 안전성 점검을 위한 월별 모니터링
5. 그 밖에 기금운용 관련 중요 위험관리 사항

② 리스크범무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제규정의 준수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용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리스크범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자금운용 현황보고) ① 리스크범무실장은 자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연간 및 월간 단위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스크법무실장은 자금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자금운용관리단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위험관리 업무협의) 규정 제5장의 위험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해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리스크법무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규정 및 관련 시행규칙, 그 밖에 하위 기준의 제정 및 개폐
2. 자산운용시스템 개발·보완

제2절 위험별 관리

제33조(신용위험의 관리) ① 규정 제58조제3항에 따라 각 운용부서장이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 유가증권 또는 자산의 신용위험 요인 분석
2. 보유 유가증권 또는 자산의 부실 징후 처리방안
3. 위탁운용 자산의 부실채권 처리방안
4. 그 밖에 신용위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리스크법무실장은 신용위험 대상 자산에 대해 매월 신용등급별 또는 차주별 비중, 신용등급 변화추이, 부도율 및 예상 손실금액 등을 분석하여 다음 월에 해당 운용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리스크법무실장은 신용등급과 만기의 편중으로 집중도 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운용부서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시장위험의 관리) 규정 제59조에 따라 운용부서장이 시장위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에 의한 자산의 평가손익
2. 주가, 금리, 환율 등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에 의한 시장 전망
3. 그 밖에 시장위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신용 및 시장 위험관리 측정) ① 리스크범무실장은 규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각각의 위험 측정을 위하여 신용 VaR(Credit VaR) 모형 및 시장 VaR(Market VaR) 모형을 통해 측정하여야 하며, 시나리오 분석과 민감도 분석 등의 보조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의 내용 중에 시장 VaR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최근 250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손실이 시장 VaR를 여러 번 초과하는 때에는 모형의 전제조건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6조(유동성위험의 관리) 투자전략실장은 기금운용의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하여 적정 현금성 자금의 규모를 산출하고, 국내채권팀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37조(법규 및 운영위험의 관리) 리스크범무실장은 위험지표 모니터링 및 운용한도 설정 등을 통해 위험을 인식·평가·통제하며, 한도초과 또는 기금운용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운영위험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제3절 자산군별 위험관리

제38조(국내채권 직접운용 위험관리) ① 국내채권팀장은 보유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최근 3개월 이내에 2개 등급 이상이 하락한 때에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으로 하락한 때에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가하여 리스크범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내채권팀장은 국내채권 직접운용에 대해 지침에 따른 벤치마크지수 수익률과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1. 0.6 퍼센트포인트 이상 저조한 상태로 5 영업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 단장에 보고

2. 0.9 퍼센트포인트 이상 저조한 상태로 5 영업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 수익률 개선방안을 마련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리스크범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국내주식 직접운용 위험관리) ① 운용부서장은 국내주식 직접 운용에 대해 지침에 따른 벤치마크지수 수익률과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5 퍼센트포인트 이상 저조한 상태로 5 영업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단장에 보고

2. 2 퍼센트포인트 이상 저조한 상태로 5 영업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수익률 개선방안을 마련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리스크법무실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40조(국내주식 위탁운용 위험관리) 국내주식형 위탁운용상품 위험관리
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해외 위탁운용 위험관리)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위탁운용상품 위험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해외주식 직접운용 위험관리) ① 해외증권팀장은 해외주식 직접
운용에 대해 지침에 따른 벤치마크지수 수익률과의 차이(달리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5 퍼센트포인트 이상 저조한 상태로 5 영업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단장에 보고

2. 2 퍼센트포인트 이상 저조한 상태로 10 영업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수익률 개선방안을 마련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리스크법무실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43조(신용위험 보고) 리스크법무실장은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대체투자 위험관리) 대체투자자산 운용은 투자 대상이 되는 상품이 다양하고 운용형태 또한 각각 다르므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대체투자 위험관리 절차) ① 제44조에 따른 대체투자의 사전 위험관리를 위해 해당 운용부서장은 리스크범무실장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하며, 대체투자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에는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 안건에 대한 협의
2. 투자 안건에 대한 위험 평가보고서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투자된 자산의 사후 위험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대체투자 운용부서장 : 대상 자산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
2. 리스크범무실장 : 매월 대상 자산에 대한 안전성 점검 및 필요한 경우 해당 운용부서장에게 시정요청

제46조(위탁운용의 모니터링) 리스크범무실장은 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월별로 점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운용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성과평가

제47조(성과평가의 방법 등) ①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연간평가와 3년

이상의 중장기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그 밖에 기금운용 성과평가 방법,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자금운용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정한다.

제48조(성과요인의 분석) ①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 단위의 성과요인은 벤치마크지수와외 초과수익률 분석과 그 밖에 자산배분 효과 및 종목선정 효과 등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단위에 대한 위험조정성과 분석에는 정보비율(Information Ratio), 샤프지수(Sharpe Ratio) 등 적정한 위험조정성과 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리스크범무실장은 일별 성과요인 결과를 누적하여 월별, 반기별, 연간 성과요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49조(성과평가 결과의 공유) ① 리스크범무실장은 제48조에 따른 성과요인 분석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스크범무실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요인 분석 결과를 기금운용 관련 부서에 자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별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0조(금전출납의 절차) ① 각 운용부서장은 해당 자산군의 거래가 발생하여 회계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자산운용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 금융기관

에서 발부한 거래 명세서를 첨부하여 투자전략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전략실장은 해당 거래 사항을 확인한 후 금전 출납에 필요한 수입·지출 결의서를 마감하고, 회계 담당 부서장에게 일일 자금수지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출납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용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각 운용부서장은 자금운용계획과 운용방안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51조(금융정보의 확인자) 금융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자산운용시스템에 수신되는 정보의 상태 확인 및 장애 해소를 위한 확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시경제 데이터 : 위험관리 담당 부서장
2. 채권시가 : 채권투자 담당 부서장
3. 주식 관련 시장 정보 : 주식투자 담당 부서장
4. 기준가 : 위탁운용 담당 부서장

제52조(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준용) 기금운용에 따른 회계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유가증권)을 준용하여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오류결과의 통보) 각 운용부서장은 기금운용 중에 발생한 거래의 오류 등에 대하여 조치한 후 그 사실을 리스크범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평가시스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사용인장) ① 기금운용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은 「사무관리규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수인으로 하며, 해당 인장의 관리는 투자전략실장이 한다.<개정 2023.12.22.>

② 사용 인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거래기관과의 계약 및 해지 등
2. 제9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3. 제13조에 따른 유가증권의 관리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된 인장은 그 내용을 사용인장날인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보고사항) 규정 및 본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와 관련한 주요 보고사항은 별표 2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자금운용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운용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결권 행사 결정 주체별 보유요건(제9조 관련)

결정 주체	보유요건(1 또는 2)
수탁자책임위원회	1. 지분 3퍼센트 이상 및 비중 1퍼센트 이상
	2. 비중 3퍼센트 이상
자금운용관리단장	1. 지분 1퍼센트 이상 및 비중 0.5퍼센트 이상
	2. 비중 1퍼센트 이상
투자전략실장	1. 지분 0.5퍼센트 이상 및 비중 0.1퍼센트 이상
	2. 비중 0.5퍼센트 이상

주1) 지분 : 한국거래소(KRX)의 해당 주식 보유 비율

주2) 비중 : 국내 주식 중 해당 주식의 내부 보유 비율

[별표 2]<개정 2023.12.22.>

자금운용 관련 주요 보고사항(제55조 관련)

보고 내용	주기	보고 대상	해당 부서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것	수시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법무실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것	수시	기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	리스크법무실
국내채권 신용채 운용비중 초과	수시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법무실
대체투자 운용점검 사항	반기	자금운용관리단장	대체투자실
신용위험의 관리	수시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법무실
자금운용 현황	월/연	이사장	리스크법무실
법규 및 운영위험의 관리	수시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법무실
국내 채권/주식, 해외주식 직접운용 위험관리	수시	자금운용관리단장	금융투자실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법무실
위탁운용 모니터링 결과	월	이사장	리스크법무실
성과요인 분석 결과	월/반기/연	이사장	리스크법무실